

의 안 번 호	1801	【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
심 사 보 고 서		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8. 20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8. 2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9. 6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이상찬)

가. 제안이유

- 외솔기념관 운영 · 관리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물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 보전 · 계승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기념관의 범위 · 주소, 업무 및 기능(안 제1조 ~ 제3조)
- 개관 및 휴관, 관람 및 행위 제한 등(안 제4조 ~ 제9조)
- 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10조 ~ 제18조)
- 유물평가심의위원회, 소장유물 관리 등(안 제19조 ~ 제31조)
- 교육 · 문화 프로그램 운영, 민간위탁, 자원봉사자(안 제32조 ~ 제34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8조 및 제9조의2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미경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외솔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

- 지역의 주요 문화시설인 외솔기념관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

제2조(공휴일)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

1. 일요일
2. 국경일 중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
3. 1월 1일
4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 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
5. 삭제 <2005. 6. 30.>
6. 부처님오신날 (음력 4월 8일)
7. 5월 5일 (어린이날)
8. 6월 6일 (현충일)
9.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 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
10. 12월 25일 (기독탄신일)
- 10의2. 「공직선거법」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
11.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
제8조(재산의 기부 등) ① 「민법」, 「상법」,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,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,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(이하 “기증품”이라 한다)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(이하 “기부 등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-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·단체 및 개인이 해

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 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.

-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.
-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(施賞)을 하거나 「상훈법」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, 수증한 박물관·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-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, 관리·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)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·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·변경·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, 수장(收藏)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·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·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